

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(연장)

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「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변경사항>

공고 및 신청기간	→	공고 및 신청기간
2025. 3. 17. ~ 4. 7.		2025. 3. 17. ~ 4. 11.

2025년 4월 8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

※ (필독)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

-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.
※ 신청자격 확인 必
-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“소상공인24(www.sbiz24.kr)”를 통해서만 신청·접수할 수 있습니다.
- **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** <https://www.sbiz24.kr/>
- ※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,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발생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**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**,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, **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.**
※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**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** 바랍니다.
- 신청자격,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- (목 적) 수출 역량별 맞춤 지원으로 해외진출 연착륙 유도
- (사 업 명) 「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」
- (지원기간) 선정일 ~ 2025년 12월 31일
- (지원규모) 60개사 내외(소공인 55개사,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)
 - *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,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(공동사업 中 마케팅-해외전시) 등 '25년 유사 지원사업 선정 시 중복지원 불가
- (신청방법) : 소상공인24(<https://www.sbiz24.kr>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(지원내용) 수출단계별 지원항목 內 필요항목 자율 선택

단계구분	세부 내용
사전진단(필수)	• 전문가 매칭, 정밀진단
1 교육·컨설팅	• 기초교육, 제품개선, 홍보 콘텐츠 개발
2 홍보·판촉	• 바이어 매칭, 온라인 B2C 판매
3 인증·물류	• 인증 지원, 통관지원, 물류지원
4 진출 확대	• 수출국 확대, 오프라인 진출, B2B판로지원, 마케팅지원
사후관리	• 수출안정망 구축, 투자유치 연계, 상담센터 운영

* 사전진단을 통한 수출단계 확정 후 해당 단계 지원항목 선택

** 단, 수출단계 확정 후 업체필요에 따라 하위단계 지원항목 선택가능

*** 예시) 수출 4단계 기업의 경우 수출 1~3단계 지원항목 선택 가능

○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
모집공고 (공단)	사업신청접수 (공단)	서류평가 및 선정 (공단)	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지원 (공단 및 전문기관)	사업수행 (소공인, 협동조합)
'25. 3. 17	~ '25. 4. 11	'25. 4월 중	'25. 4월 중	~'25. 11. 30.

2

세부지원내용

선정·진단

① 교육컨설팅

② 홍보·판촉

③ 인증·물류

④ 진출 확대

사후관리

- (전문가 매칭) 수출 희망 국가 및 제품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으로 **수 지원 단계의 1:1 컨설팅*** 및 행정 지원
* 제품개선, 홍보, 인증, 통관, 계약 등 수출 단계별로 수반되는 **수 분야**
- (정밀진단) 제품의 특·장점, 개선점 분석을 통한 **수출역량 진단** 후 타깃 국가·연령대 설정 등 **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도출**

선정·진단

① 교육컨설팅

② 홍보·판촉

③ 인증·물류

④ 진출 확대

사후관리

- (기초교육) 쇼핑몰 활용, 국가별 수출 현황 등 **온·오프라인 실무 교육(수출 아카데미), 수출 전문기관***의 교육과정 연계 지원
* (관세청) 관세 및 통관 실무 등 온·오프라인 교육 연계 등
- (제품 개선) 컨설팅을 통한 제품 성분·구성, 포장·패키지, 가격 등 수출 타깃 국가의 소비 형태별 **제품 개선 및 현지화** 지원
- (홍보 콘텐츠 개발) SNS 홍보 채널 개설 및 **마케팅 활용 교육, 제품 리플릿·카탈로그·홍보영상 제작 및 번역** 지원

선정·진단

① 교육컨설팅

② 홍보·판촉

③ 인증·물류

④ 진출 확대

사후관리

- (온라인 홍보) B2B 플랫폼 활용, **제품구매희망 (RFQ) 정보 제공** 및 바이어 대상 **제품 홍보 메일링 서비스** 지원
- (오프라인) 수출상담회 및 **품평회 참여 기회 제공, 통역 지원, 제품 분야별 진성 바이어 POOL 제공·매칭**
- (온라인 B2C 판매) 수출 국가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, 해당 플랫폼 내 **온라인 마케팅(디스플레이 및 검색 광고 등) 지원**

선정·진단	① 교육·컨설팅	② 홍보·판촉	③ 인증·물류	④ 진출 확대	사후관리
-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

- (인증 지원) 국가·품목별 인증 비용(지식재산권 포함) 및 관세청의 인증 취득 지원 사업(인증 수출자제도) 연계 지원
- (통관·물류 지원) 통관 이슈 발생시 공익 관세사(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업)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및 수출 물류비 지원

선정·진단	① 교육·컨설팅	② 홍보·판촉	③ 인증·물류	④ 진출 확대	사후관리
-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

- (수출국 확대) 진출 희망 국가·업종별 시장현황, 경쟁군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개선,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(오프라인 진출) 해외 진출 중인 국내기업 대형마트(롯데마트 등), 해외 현지 대·소형마트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입점 지원
- (B2B 판로지원) 국제 박람회*, 해외현지 피칭대회 참여를 통해 바이어·소상공인 간 직접 상담·품평 기회 제공
 - * 종합 또는 분야별 특화박람회 內 소상공인 공동관 2회 개최 예정, 바이어 사전매칭 및 숙박비 지원, 기타홍보 등 참여업체 당 1회 추가혜택 제공
- (마케팅 지원) 인플루언서(라이브커머스, V-로그, PPL 등)를 활용한 모바일·온라인 홍보를 통해 타깃 국가 시장 內 인지도 제고

① 선정·진단	② 교육·컨설팅	③ 홍보·판촉	④ 인증·물류	⑤ 진출 확대	사후관리
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

- (수출안전망 구축) '한국무역보험공사' 협력,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이 발생한 수혜자 대상 단체 수출보험 가입 지원
- (투자유치 연계) 기업 투자사 POOL 대상의 정기 제품 홍보, IR 대회(강한소상공인) 참여 연계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
- (상담센터 운영) 지원 후 계약 성사 지속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번역, 통관 상담, 서류 준비 등 추가 행정 지원

3

신청자격

- (지원대상) 60개사 내외(소공인 55개사,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)
 - (소공인)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'소상공인'이며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'제조업'이 주업종인 곳(업종코드 : C10~C34)
 - (협동조합) 최근 10년('15~'24년)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(공동사업, 판로지원사업)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* 및 연합회
- * 5인 이상 (소상공인 50%이상)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한정
- 마감일(4. 11.) 기준,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 제외

- ▶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
- ▶ 휴·폐업중인 경우
- ▶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불임3)이 주업종인 경우
- ▶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경우
- ▶ 사행성·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·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경우
- ▶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
- ▶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된 경우
- ▶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중 마케팅(해외전시) 선정된 경우
- ▶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(오프라인) 해외 박람회 참여할 경우
- ▶ 기타 공단 내 유사사업 선정 후 참여할 경우

4

신청방법

- (신청기간) '25. 3. 17(월) ~ 4. 11(금) 18:00까지(기한엄수)
- (신청방법) “소상공인24”를 통한 신청·접수

구분	신청방법
사업조회	(1단계) 소상공인24 홈페이지(sbiz24.kr) 접속 → 회원가입(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 必,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) → 로그인 (2단계) 홈페이지 상단 “지원사업신청”→“공고조회”→ “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 지원사업 모집공고” 선택
신청서 제출	(1단계) “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” 선택 (2단계) [업체선택] [개인정보동의] [자가진단] [신청정보작성]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(3단계)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(완료 후 수정불가)
참고사항	※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.

○ 신청서류

- (소공인) 소공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

구분	제출서류		발행처
공통서류	<서식1> 사업신청서		공고 內 서식확인
	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*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** (협동조합)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	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
	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법인의 경우 대표자, 법인 전부 제출		
특허·인증,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(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)		첨부파일 업로드	
주업종 확인서류	2개 中 택 1	▶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
		▶ 「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[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	
	'24년 서류발급이 불가할 경우 '23년 서류로 대체 - 단, 공고일(3.17)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[붙임3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		공고 內 서식확인
상시근로 자 확인서류	3개 中 택 1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▶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소상공인 명시 必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
		↓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↓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▶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다음 중 택 1) ▶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▶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▶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▶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	국민건강보험공 단	

- (협동조합)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

구분	제출서류	발행처
공통서류	<서식1> 사업신청서	공고 내 서식확인
	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*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** (협동조합)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
	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법인의 경우 대표자, 법인 전부 제출	
	특허·인증,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(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)	첨부파일 업로드
협동조합 확인서류	▶ 조합원 명부 * 성명, 업체명, 사업자번호, 작성일자, 조합명의 인감날인 필수 (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)	공고 내 서식확인 첨부파일 업로드
	▶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* 최근 1개월 이내 발급	등기소
매출확인 서류	아래 서류 모두 제출 (1) (필수) 2022,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(2) (필수) 2024년 매출확인서류 * (일반과세자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* (면세사업자)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	국세청
소상공인 확인서류 (택1 제출)	▶ (권장) 소상공인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 ▶ (가능) 상시근로자 확인서류+매출액 확인서류 * 조합원 전원 제출 ** 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제출 불필요	중소기업현황정 보시스템

*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- (신청절차) ①업체선택 → ②개인정보 동의 → ③자가진단동의 → ④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(제출 후 수정불가)

[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예시]

소상공인24 | 지원사업소개 | 지원사업신청 | 소식알림 | 이용안내 | 증명서발급

지원사업신청

지원사업통합조회

소진공 공고조회

지자체 공고조회

유관기관 공고조회

대출상품 조회

소진공 공고조회

검색조건: --전체-- | 검색어: 역량단계별 | 조회 | 초기화

모집유형: --전체-- | 신청: --전체--

현재 1/1, 총 1건, 페이지당: 10

번호	모집유형	공고명	사업시작일자	접수기간	신청
1	소상공인	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	2024-05-01	2024-04-30 18:00 ~ 2024-05-14 18:00	신청마감

<사전준비>

-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(소상공인 마당 아이디/비번 활용 가능)
 - **주 대표자 명의 가입**(공동대표 신청 불가) 후 본인 인증 필수
- ② 기관·업체 정보등록
 - 마이페이지 → 기관/업체정보 → 신규업체 등록/기존업체 등록 택1
 -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/휴대전화번호/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
 - ※ **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**

<신청절차>

- ① 지원사업신청 → 소진공 공고조회 →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(단어로 검색 가능)
-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→ 지원신청 버튼 클릭
- ③ 신청완료 후에는 **수정 불가**

5

선정절차

- **(평가절차)** 신청접수(~4.11) → 서류평가(4월 중) → 사업선정(4월 중)
 - **(선정평가)** 제출서류 기반 외부전문가 서류평가 진행
 - * 신청자격 미충족, 필수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 - **(선정통보)** 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하여 결과 통보
 - * 선정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
- **(평가항목)**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

구 분	평 가 항 목	배 점
사업추진기반	• 사업 이해도, 사업 수행 타당성, 해외진출 가능성 등	20
사업추진계획	•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, 수행계획의 구체성, 해외진출 의지 등	30
제품역량	• 기술 및 품질경쟁력, 시장성 및 가격경쟁력 등	35
기대효과	• 성장가능성, 지속가능성 등	15
총 점		100

6

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,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
-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·형사소송 가능

7

문의처

구 분	담 당 자	문 의
사업신청	소상공인24 시스템(회원가입 등) 관련	☎ 1644-5302
사업문의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매촉진팀	☎ 042-363-7794

- 【서 식】** 1. 사업신청서
2. 조합원명부

- 【붙 임】** 1. 소공인 업종 및 기준
2. 지원제외업종
3.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

『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』 사업신청서

◆ 사전에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구분	소공인 <input type="checkbox"/>			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			
업체개요	업체명				사업자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대표자	성명				휴대폰번호	
		메일주소					
	담당자	성명				휴대폰번호	
		메일주소					
주소				개업년월			
매출액	2022		2023		2024		
		백만원		백만원		백만원	
수출액		천\$		천\$		천\$	
※ 신규창업자이거나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'0'으로 작성							
지원 항목 희망조사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 실무교육	<input type="checkbox"/> 바이어 매칭	<input type="checkbox"/> 통관 물류지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 박람회*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제품개선	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 온라인 판매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국확대	<input type="checkbox"/> 마케팅 지원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콘텐츠 제작	<input type="checkbox"/> 인증	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프라인 진출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무역보험 등)			
	※ 중복선택 가능 ※ 해당 선택은 희망조사이며, 선정 후 수출액 등 업체의 수출역량을 고려하여 지원가능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						
수출희망 국가	1순위 :		2순위 :		3순위 :		
	※ 대륙 기준이 아닌 개별 국가로 기재(예시: 동남아시아→ X , 베트남→O)						
제품개요	제품특징 및 경쟁력	• ※ 타사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자사만의 제품 해외 경쟁력에 대하여 1,000자 이내 작성. (시장성, 가격경쟁력, 품질 및 기술력, 디자인 및 창의성 등 자사 제품역량을 상세히 기술)				제품실사	
						제품명	

붙임1

소공인 업종 및 기준

*통계분류포털 한국산업표준분류 10차 개정 기준

업종		매출액 기준	상시근로자수	
제조업	C10 · 식료품 제조업	120억원 이하	10명 미만	
	C11 · 음료 제조업			
	C14 ·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		
	C15 ·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		
	C19 · 코크스,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			
	C20 ·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		
	C21 ·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	
	C23 ·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			
	C24 · 1차 금속 제조업			
	C25 ·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		
	C26 ·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	
	C28 · 전기장비 제조업			
	C29 ·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	
	C30 ·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	
	C32 · 가구 제조업			
	C12 · 담배 제조업			80억원 이하
	C13 ·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			
	C16 ·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			
	C17 ·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		
	C18 ·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		
C22 ·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		
C27 ·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		
C31 ·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		
C33 · 기타 제품 제조업				
C34 ·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10억 원 이하			

붙임2

지원제외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20.12.~21.12.) (4page 참고)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

표준산업분류	업종
	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0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- ▶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
-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,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- ▶ 기타
 -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
붙임3

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

※ 다음과 같이 소공인 지원 시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.

최근창업한 자료서 당기(직전회계연도)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(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),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,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

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

업체명 (상호)	대표자명	사업자 등록번호
사업자등록증(명) 상 업태(업종) (예 : 제조업+도소매업)		
주업종명(업종코드)* (예 : 식료품 제조업(C10))		

* [붙임1,2]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

위와 같이 실제 영업 증임을 확인하고,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,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업 체 명 :

대 표 자 :

(인, 서명)

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